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초구청장 제출(의안번호 제23호)]



2026. 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	제출연월일	2026. 8. 14.
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민희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 (안 제12조)

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안 제7조~안 제10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6. 7. 9.(목) ~ 2026. 7. 29.(수) (20일간),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별첨

1. 개정조례안의 제출 경위

-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2022. 1. 1.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함.
- 통합 계정은 각종 회계·기금 간 여유자금의 예탁·예수를 통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립성·융자성 기금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39,168,000천원이며, 재정안정화 계정은 재정안정 시 여유자금을 사전 확보하여 긴급한 재정지출 및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성 기금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694,844천원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및 체계를 정비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임.

2.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¹⁾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며,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기금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정 의무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

1)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 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2031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회계·기금 간 예탁·예수를 통해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종전 일반회계 예산 부족 시 예탁했던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을 회수하여 재원을 확보 중에 있고 이자상환은 2028년, 원리금 상환은 2033년도까지 예정되어 있으므로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해 보임.

<일반회계 예탁 현황>				
(단위 : 천원)				
차수	예탁시기	예탁금액	상환기간	상환금리
총계		55,988,396		
1차	'20. 4월	24,996,000	거치기간(이자상환) : '20년~'23년 원리금 상환 : '23년~'28년	1.56%
2차	'20. 6월	8,000,000	거치기간(이자상환) : '20년~'23년 원리금 상환 : '23년~'28년	1.56%
3차	'25. 4월	13,000,000	거치기간(이자상환) : '25년~'28년 원리금 상환 : '28년~'33년	2.02%
4차	'25.10월	9,992,396	거치기간(이자상환) : '25년~'28년 원리금 상환 : '29년~'33년	2.02%

- 나아가 재정안정화 계정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및 구 재정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은 발생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충분한 존속기한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조문 정비(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 ----- ----- ----- ----- 한다. <단서 삭제>

○ 현행 조례 제7조제3항 단서의 내용 중 위촉직 위원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위원 성비의 구성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

- 2)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내용임.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 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u>문화행정국장,</u> <u>밝은미래국장,</u> <u>주민생활국장,</u> <u>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으</u> <u>로 한다.</u>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④ ----- ----- ----- -----. 1. 당연직 위원은 <u>기금 운용 소관</u> <u>국장 및 소장</u> 으로 한다.

- 아울러 안 제7조제4항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이는 종전에는 기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가 커 기금 간 예탁·예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금의 소관 국장으로 당연직을 구성하였음.
- 그러나 기금의 조성액 규모로 판단한다면 청사건립기금이 약 1,328억원임에도 소관 국장인 공간혁신국장이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조직 개편이나 분장 사무 등의 조정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나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보건소에서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치하는 법정 의무기금인 점을 고려하여 보건소장을 포함함으로써 각종 기금

간의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 위원회 위원의 임기(안 제9조)

- 현행 조례 제9조제1항은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단서에서 위원인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위원의 소속 기관, 직위 등 업무 등에 기인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이 임기가 됨. 따라서 위원회의 운영이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직위에 의해 임명되는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u>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u> ② <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인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u>	제9조(위원의 임기) <u>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달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

- 안 제9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또한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였음.
- 아울러 안 제9조 단서에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여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회의 경우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의 임기를 맞추려는 것으로 보임.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 정비(현행 조례 제8조 및 제9조제3항 삭제)

- 「(구)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26. 8. 6. 공포·시행,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및 해촉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
- 이에 현행 조례 제8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중요한 사항의 심의·의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

피·회피 사유를 규정하였고, 제9조제3항에는 위원의 해촉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의 책임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한편 서초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한 기본조례의 성격을 갖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가 2026. 8. 6. 개정되면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신설되었고, 해촉 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여 개별 조례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유를 달리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유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기본 조례를 따르는 것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현행 조례 제10조제7항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서면회의로 개최되어 지급된 수당은 없음.

현 행	개 정 안
<u>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u> <u>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삭 제>

- 그러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³⁾에서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에 따

3) 제13조(수당)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 재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임.

■ 간사 조문 이동 및 수정(안 제10조제8항)

- 현행 조례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해 규정한 조문이나, 제7조제5항은 위원회의 간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에 해당하므로 제10조(위원회의 운영)로 조문을 이동하여 조 제목과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담당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 기금 담당 과장이 된다.

- 한편,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실무적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운용하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기금의 심의·운용 과정에서 통합 기금 담당 과장(기획예산과장)의 발언이나 참석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간사를 다른 사람으로 하고, 통합 기금 담당 과장(기획예산과장)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회의 위

원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용어정비, 어문규정,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의 수정(제1조~제5조, 제7조제2항, 제9조~제1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본 조례의 목적 조문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의 내용을 재기재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위임조례의 일반적인 목적규정 형식으로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는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구청장임을 조례에 명확하게 적시하고자 함.
- 나아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용어에 맞게 “통합계정”→“통합 계정”, “재정안정화계정”→“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띄어쓰기를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였음.
-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문장 구조 등을 정비하고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임.

Ⅲ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 12. 31.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 12. 31.로 연장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과 실익이 낮은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의 입법경제성을 높이고,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확대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회계·기금간 예탁·예수를 통해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정안정화 계정은 구 재정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인 점을 고려할 때 세수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입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재원 간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재정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해 보임.
- 한편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구 기금 운용 소관 국장 및 소장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조직 개편이나 분장 사무 등의 조정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나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구에서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 간의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 아울러 간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관계법령이나 기본조례의 성격을 갖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고,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였음.